

집합투자규약 변경 내역

(1) 기재사항 변경

- 1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사항 반영(S 관련 클래스 가입자격 변경 및 S수익증권 판매보수 인하)

항목	정정전	정정후
1.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사항 반영(S 관련 클래스 가입자격 변경 및 S수익증권 판매보수 인하)	제3조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 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종류S 수익증권: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종류S-P 수익증권: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이며,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제3조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 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종류S 수익증권: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관련 클래스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가입한 투자자 종류S-P 수익증권: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관련 클래스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가입한 투자자이며,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1.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사항 반영(S 관련 클래스 가입자격 변경 및 S수익증권 판매보수 인하)	제37조 (보수) 종류 S 수익증권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1.000]	제37조 (보수) 종류 S 수익증권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950]

투자설명서 변경 내역

(1) 기재사항 변경

- 1 위험등급변경(5등급->4등급)
- 2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갱신
- 3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사항 반영(S 관련 클래스 가입자격 변경 및 S수익증권 판매보수 인하)
- 4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 5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 6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 7 운용전문인력 운용규모 업데이트
- 8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항목	정정전	정정후
1. 위험등급 변경(5등급→4등급)	신한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 을 감안하여 5등급 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신한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에 상응) 을 감안하여 4등급 으로 분류하였습니다.
1. 위험등급 변경(5등급→4등급)	제2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 4.35%, 5등급	제2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실제 수익률 변동성(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에상응액 기준) 10.20%, 4등급
2.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갱신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최근연월갱신(기준일: 직전회계연도)
2.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갱신	제3부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3부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최근연월갱신(기준일: 직전회계연도 및 2024년 8월 31일)
3.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사항 반영(S 관련 클래스 가입자격 변경 및 S수익증권 판매보수 인하)	제2부 6.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11.매입, 환매 및 전환 기준 /13.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종류별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이며,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제2부 6.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11.매입, 환매 및 전환 기준 /13.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종류별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관련 클래스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가입한 투자자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관련 클래스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가입한 투자자이며,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3.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사항 반영(S 관련 클래스 가입자격 변경 및 S수의 증권 판매보수 인하)	제2부 6.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종류형구조 (2)종류별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경로-온라인슈퍼(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에 비해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제2부 6.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종류형구조 (2)종류별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경로-온라인슈퍼(S)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S 관련 클래스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다른 클래스(가입자격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보다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3.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사항 반영(S 관련 클래스 가입자격 변경 및 S수의 증권 판매보수 인하)	제2부 13. 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S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 보수율: 0.100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S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 보수율: 0.095
4.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제2부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연금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분리과세한도: 1,200 만원(공적연금소득,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이연 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제외) 연금소득이 1,200 만원 초과하는 경우도 종합과세 또는 16.5%(지방소득세포함)의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함. (분리과세 선택은 2023년 1월 1일 이후연금수령분부터 적용)	제2부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연금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분리과세한도: 1,500 만원(공적연금소득,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이연 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제외) 연금소득이 1,500 만원 초과하는 경우도 종합과세 또는 16.5%(지방소득세포함)의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함. (분리과세 선택은 2024년 1월 1일 이후연금수령분부터 적용)
4.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제2부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부득이한 연금의 수령 사유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가입자가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신설>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에 한함)의 질병, 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제2부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부득이한 연금의 수령 사유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에 한함)의 질병, 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가입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제2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가입자가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5.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제2부 11. 매입, 환매 및 전환 기준 <신설>	제2부 11. 매입, 환매 및 전환 기준 라. 중도환매 가능여부 및 환매수수료 부과여부 <표 신설>
6.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7. 운용전문인력 운용규모 업데이트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최근연말갱신(기준일: 2024년 8월 31일)
8.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라. 운용자산 규모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라. 운용자산 규모 -최근연말갱신(기준일: 2024년 8월 31일)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내역

(1) 기재사항 변경

- 위험등급변경(5등급->4등급)
-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갱신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사항 반영(S 관련 클래스 가입자격 변경 및 S수의증권 판매보수 인하)
-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 운용전문인력 운용규모 업데이트

항목	정정전	정정후
1. 위험등급 변경(5등급→4등급)	신한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5등급 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신한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에 상액) 을 감안하여 4등급 으로 분류하였습니다.
2.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갱신	투자비용, 투자실적 추이(연평균 수익률)	투자비용, 투자실적 추이(연평균 수익률) -최근연말갱신(기준일: 직전회계연도 및 2024년 8월 31일)

<p>3.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사항 반영(S 관련 클래스 가입자격 변경 및 S수의 증권 판매보수 인하)</p>	<p>집합투자기구의 종류: 판매경로-온라인슈퍼(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p>	<p>집합투자기구의 종류: 판매경로-온라인슈퍼(S)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S 관련 클래스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다른 클래스(가입자수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보다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p>
<p>4.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p>	<p>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p>	<p>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p>
<p>5. 운용전문인력 운용규모 업데이트</p>	<p>운용전문인력</p>	<p>운용전문인력 -최근현황갱신(기준일: 2024년 8월 31일)</p>